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923
----------	------

제출년월일 : 2016. 11. .

제 출 자 : 안산시장

개정이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교통오지노선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하여 운송 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적자 보전 금액을 상향하여 지원함으로써 대중교통노선을 확충하여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보조금 지원 대상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개선 명령한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 명확히 함. (안 제2조제1항)
-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개선명령한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그 노선의 운송수지 적자금액 보전의 지원비율 “70퍼센트이내”를 “예산범위에서”로 개정 함(안 제2조제1항)

개정조례안 :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47조, 「경기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붙임

사전예고 결과 : 붙임

- 입법예고 : 2016. 10. 6. ~ 10. 31. [25일간]
- 예고결과 : 의견제출 없음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비수익노선 지원 현황
- 방침결정문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을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시장이 정하는 수익성이 없는 교통오지노선”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개선명령한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 하고, “적자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를 “적자금액을 예산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대중교통과
입	실·과장 직위·성명	대중교통과장 이 장 원
안	담당·팀장 직위·성명	버스계장 김 종 덕
자	담당자 성명·전화	구본석 (행정 295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재정지원) ①시장은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자”라 한다)가 시장이 정하는 지역의 수익성이 없는 교통오지노선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운송수지 적자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재정지원) ①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개선명령한 수익성이 없는 노선 적자금액을 예산범위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2923
------------	------

발의년월일 : 2017년 4월 26일
발 의 자 : 이상숙 의원 등 7인

□ 수정이유

- 안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포일보다 시행일이 우선할 수 없으므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함.
(안 부칙)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u>2017년 1월 1일</u>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u>공포한 날부터</u> 시행한다.